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8조2(최소.심화전공 인정학점)에 의거하여 단국대학교 (이하“본 대학교”라 한다) 보건행정학과와 심화전공인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프로그램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재)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이하 “인증”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학칙 별표2 하단의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관련 사항으로, 교육과정 책임자(Program Director)는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 (Program Director)의 역할을 당연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개정 2022.3.1.>

제 2 장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제3조(주관학과)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은 보건행정학과에서 주관한다.

제4조(프로그램 책임자) ① 프로그램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은 제외한다.<개정2020.11.1.>

② 프로그램 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의 조직, 관리, 지속적 검토, 기획, 개발, 예산 수립 및 집행,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프로그램 인증의 총괄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
3. 인증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업무분담에 대한 사항
4. 기타 인증과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관리위원회) ①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프로그램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전임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평가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일 때에는 프로그램 책임자가 결정한다.<개정 2020.11.1.>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3.1.>
 - 1. 교육목표 달성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 2.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 3. 프로그램 행·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4. 프로그램 이수, 전입 및 이수포기에 관한 사항
 - 5. 프로그램의 주기적 질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3 장 프로그램의 이수

제6조(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 1. 보건행정학과에 입학하는 신입생
- 2. 보건행정학과로 전입하는 학생
- 3. 타 대학에서 본교 보건행정학과로 편입하는 학생

제7조(신청절차) ① 제6조제1호의 보건행정학과 신입생은 입학 시 프로그램 이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격을 갖춘 학생이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수 신청서와 직전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절차) ① 프로그램 책임자는 제7조에 따른 이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에 이수대상자 선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한 경우 위원회에 대체 교과목[별표 1]에 대한 심의 및 동등성 인정 절차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프로그램 이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프로그램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제9조(프로그램 이수 포기) ①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 비인증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년 최종학기 개시 전에 이수포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학과장은 이수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평가관리위원회에 이수포기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과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수 포기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최종성과) ①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설정한 인재상과 정평원이 제시한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최종성과[별표 2]를 설정한다.

- ② 프로그램 최종성과는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학과 홈페이지, 프로그램 이수안내서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③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은 프로그램 최종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개정 2020.11.1.>

제11조(이수학점) ①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은 [별표 3]의 프로그램 선후수체계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인증에 필요한 학점은 [별표 4]의 필수이수 교과목 및 [별표 5]의 특성화영역 선택이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3.1.>
- ③ 불가피한 사유로 필수지정된 선후수체계를 지키지 못할 경우 후수교과목 담당교수에 후수교과목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수교과목의 수강 신청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2.3.1.>
- ④ 제6조 2,3에 해당하는 학생은 편입 첫 학기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여 수업설계를 하고, 미준수 사유를 후수 교과목 담당교수에 안내하여 후수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2.3.1.>

제12조(프로그램 최종성과 성취도 평가) ① 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학습성과 성취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프로그램 최종성과의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2. 최종성과 성취도 개선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기별로 운영된 필수 및 선택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평가, 현장실습 평가 및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 3. 최종성과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최종성과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교육과정 개선계획을 교육과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3조(인증심사) ① 프로그램 이수 후 평가관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성취도 인증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인증의 충족여부 심사는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최종성과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2020.11.1.>

제14조(졸업요건) ① 학칙 제47조(졸업요건) 및 제47조2(최소 및 심화전공)을 만족하고,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제13조의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1.1.><개정 2022.3.1.>

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 명칭에 보건학사(심화전공 보건의료정보관리)로 표기한 학위증을 발급한다([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제 4 장 보 칙

제15조(지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통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0. 9.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03.0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이수신청서

학 번		성 명		
구 분 (해당사항에 ○표)	신입학	편입학	전과	기타

상기 본인은 단국대학교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하여 보건
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03.01.>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이수포기신청서

학 번		성 명	
교육과정 적용년도 (입학년도)	학년도	이수포기 학년도/학기	학년 학기
포기 사유 (자세히 기술)			
상기 본인은 단국대학교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장 귀하			
지도교수 상담결과			
지도교수 서명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학사 자격을
각추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소속 :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학위명 : 보건학사(보건행정학과/○○과정)
보건의료정보관리

○○○○년 ○○월 ○○일

단국대학교 총장 ○○박사 ○ ○ ○



제 호
학위번호 :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학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소속 : 보건복지대학 보건행정학과
학위명 : 보건학사(보건행정학과/○○과정)
보건의료정보관리

○○○○년 ○○월 ○○일

단국대학교 총장 ○○박사 ○ ○ ○



제 호
학위번호 :

학 위 증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학사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소속 : 공공·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학위명 : 보건학사(보건행정학과/○○과정)
보건의료정보관리

○○○○년 ○○월 ○○일

단국대학교 총장 ○○박사 ○ ○ ○



제 호
학위번호 :

[별지 제4호 서식] 영문 학위증(서체 : 제목, 성명, 학위명은 Old London체, 그 밖의 내용은 Palatino Regular체) <개정 2022.03.01.>

Dankook Universit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ereby confers on

(English name)

the degree of

**Bachelor of Science in Public Health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with all the honors, right,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Yongin, Republic of Korea
on the (day) day of (month), (year)



(English name), Ph.D.
President of the University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03.01.>

후수교과목 수강신청서

- 2020학년도 프로그램 소속학생부터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후수교과목 수강 신청을 희망할 시에 작성함(별표 3. 프로그램 교과목 선.후수 체계 참조)

성명		학번	
학년/학기			
이수하지 못한 선수교과목		수강을 원하는 후수 교과목	
후수교과 수강 신청 사유 (자세하게 기술)			
선수교과목 이해도 평가 - 수강생이 담당 후수교과목을 수강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사항 포함			
후수교과 담당 교수 최종 평가 점수 및 의견			
성과관리 위원회 의견			
성과관리위원회	위 학생의 후수교과 수강을 허가 / 불허 함 20 년 월 일 (서명)		

별표 1. 보건의료정보관리 동등성 인정 교과목

현행(보건의료정보관리 관련 교과목)	법 개정 전(의무기록관련 이수교과목)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의료보험
2. 건강정보보호	-
3. 병리학	병리학개론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의료정보관리학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의무기록학
7. 보건의료조직관리	-
8. 보건의료통계	병원통계
9. 암등록	암등록
10. 의료관계 법규	의료관계법규
11. 의료의 질 관리	적정진료보장
12. 의료정보기술	전산학
13.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의무기록실습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실무	-
15. 의학용어	의학용어
16. 질병 및 의료행위분류	질병 및 수술분류
17.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
18. 현장실습	-
-	의무기록전사
-	공중보건학개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전산학’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한 보건의료DB, 보건의료DB 실습, 데이터베이스, 의료데이터베이스론은 현행 교과목 ‘의료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 관리’의 동등성 인정 교과목으로 인정함

별표 2. 프로그램 최종성과

PO	최종성과 역량	보건의료정보관리 프로그램 최종성과
PO1	보건의료정보 기본 소양	보건의료정보관리의 기본 지식 및 기술을 이해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에 적용한다.
PO2	의무기록정보의 데이터화 역량	의무기록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건의료정보 및 데이터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질병 및 의료행위 코드를 분류한다.
PO3	의료데이터 및 정보 활용 역량	보건의료정보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데이터를 변환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한다.
PO4	법.제도에 따른 변화관리 및 정보보호 역량	법,인증,기술,건강정보보호의 원칙과 변화를 보건의료정보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의료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PO5	보건의료정보표준기반 정보관리 역량	양질의 정보 생성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표준과 관련 정보기술을 정보시스템에 적용하고, 유지 관리한다.
PO6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정보관리 역량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을 위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질 향상 활동을 수행한다.
PO7	조직내 보건의료정보센터로서의 리더십 역량	보건의료조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직 내 보건의료정보관리자로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PO8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의 직업윤리 함양	보건의료정보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고, 직업윤리를 강화하여 실무를 수행한다.
PO9	양질의 데이터 거버넌스 역량	데이터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기준을 인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가 수집되고 이용되도록 관리한다.
PO10	자기계발을 위한 글로벌화 및 의사소통 역량	보건의료제도 및 정보화 환경 변화에 적합한 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고, 업무에 적용한다.

별표 3. 프로그램 교과목 선.후수 체계 <개정 2022.12.01.>

선수 교과목명			필수	후수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년	학기	교과목명
1	1	해부생리학	→	2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1
				3	1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3	1	암등록
				4	1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2	2	건강보험론
				3	2	건강보험실무
1	2	병리학	→	2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1
				3	1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3	1	암등록
				4	1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2	2	건강보험론
				3	2	건강보험실무
1	2	의학용어1	→	2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1
				3	1	의무기록정보분석실무
				3	1	암등록
				4	1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2	2	건강보험론
				3	2	건강보험실무
2	1	질병및의료행위분류1	→	4	1	의무기록정보질향상실무
2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2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별표 4.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필수이수 교과목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보건의료정보관련 과목

교과목	실습과목 여부	학점
1. 보건의료정보관리학		3
2. 보건의료정보관리실무	실습	2
3. 보건의료조직관리		3
4. 건강정보보호		2
5. 질병및의료행위분류	실습	2+2
6. 의무기록정보 분석실무	실습	2
7. 의무기록정보 질향상실무	실습	2
8. 압등록	실습	2
9. 의료의 질관리		3
10. 건강보험이론및실무	실습	2+2
11. 보건의료통계	실습	3
12.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실습	2
13. 의료정보기술		2
14. 의료관계법규		3
15. 의학용어		3+3
16. 병리학		3
17. 해부생리학		3
18. 현장실습	실습	2
총 계		51

별표 5.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선택이수 교과목

특성화 학습 영역	교과목	학점
보건의료관리	1. 공중보건학	3
	2. 병원경영학	3
	3. 국제보건의 이해	3
	4. 보건행정학	3
	5. 병원회계학	3
보건의료정보기술	6.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이해	2
총 계		17